

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4. 1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91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
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를 폐지함.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종전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07.9.27 「하수도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과태료 징수 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또한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12.21 제정, 2008.6.22 시행)이 시행되면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를 운영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